

사회봉사활동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4.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법) 본 대학 재학 기간 중 평일에 수업이 없는 요일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소정시간 이상 동안 소정의 봉사활동 실시 전 사회봉사활동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소정의 사회봉사활동 후 교학처로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014.3.1.>

제3조(교과목명 및 이수구분) 교과목명은 사회봉사활동이라 하고, 교과 이수구분은 교양으로 한다.

제4조(교과목 개설) 교육과정의 매학기에 교양으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제5조(이수학점 및 시수) ① 사회봉사활동 학점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 시까지 최대 1학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4.3.1.>

② 사회봉사활동 인정시간은 실습 30시간 이상이며,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재학 기간 중 분할 활동할 수 있다.

제6조(수강신청 및 성적처리) 봉사활동 기간은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로 하되, 수강신청과 성적처리는 매학기에 한다.

제7조(봉사인정활동) ① 봉사대상기간은 정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사회가 인정하는 기관에 한한다.

②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와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육체적 활동이 요구되는 근로봉사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교육봉사나 특수봉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봉사로 인정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으며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 및 자급자족으로 운영되는 능력 있는 기관단체는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정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2. 환경보호단체나 사회봉사단체의 봉사행사 참여
3. 비영리, 공익단체, 비정치적 기관과 단체 봉사행사 참여
4.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NGO와 같은 시민단체나 기구에 봉사행사 참여
5. 봉사활동을 지도·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있는 단체에 봉사행사 참여
6. 천재지변 발생 시 재난복구 참여
7. 헌혈 1회에 봉사활동 8시간으로 헌혈4회 이상(전혈헌혈, 성분헌혈(혈소판, 혈장) 인정)
8.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 활동

제8조(제출서류) ①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기간 내에 사회봉사활동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②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해당 봉사활동을 마친 다음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봉사대상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사회봉사활동 확인서와 함께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③ 삭제 <2013.7.1.>

제9조 삭제 <2013.7.1.>

제10조(성적평가 및 부여방법) ① 학칙 시행세칙 제32조의 11에 의거하여 봉사시간은 30시간이상, 활동주수는 8주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부여 방법은 S(Success)/U(Unsuccess)로 부여한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균평점산출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3.7.1.>

② 봉사활동 성적평가 등급이 D 이상이면 S(Success)로 성적을 부여한다.

③ 봉사활동 성적평가 등급이 F이면 U(Un-success)로 성적을 부여한다.

④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미달된 경우에는 성적을 U로 평가한다. <개정 2013.7.1., 2014.3.1.>

⑤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을 U로 평가한다. <신설 2013.7.1.> <개정 2014.3.1.>

⑥ 봉사활동 성적부여가 U(Un-success)이면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S(Success)이면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 된다. <신설 2013.7.1.>

제11조 삭제 <2013.7.1.>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